

자료 08-01

제42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2008. 2. 29

김형준 ·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심포지엄 개요

- 주 제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 일 시 2008. 2. 29(금) 14:00~16: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 14:00~14:10 인사말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14:10~15:50 주제발표 및 토론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 ▶ 사회자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 발표자 김형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 토론자 김도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경대 교수)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
 장지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정병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최철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가나다 순)
- 15:50~16: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16:00 폐회

목 차

1. 납세협력비용이란 무엇인가?	1
2.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2
가. 자료의 소개	3
나.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5
다.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16
라. 종합소득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28
마.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	31
바. 우리나라 납세협력비용의 특징	38
3.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활용	40
가.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 연구 배경	40
나. 미국의 납세협력비용과 활용	42
다. 영국의 납세협력비용과 활용	44
라. 기타 OECD 회원국의 사례	48
4. 정책과제	50
가. 세법 제·개정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의무화	50
나. 세제 간소화	51
다. 전자신고방식의 확대 및 고도화	52
라. 세정의 성과지표로 활용	54
참고문헌	55

표 목 차

<표 1> 설문에 응답한 법인의 분포	4
<표 2> 설문에 응답한 개인사업자의 분포	4
<표 3> 사업체 규모별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이전 연구	5
<표 4> 법인세에서의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	7
<표 5>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규모	8
<표 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와 국세통계연보의 신고 법인의 비교	9
<표 7> 법인세에서 업종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10
<표 8>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치: 매출액 기준	13
<표 9>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추정치	15
<표 10>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의 사례조사: 정수화(1993)	16
<표 11>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액 규모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19
<표 12> 부가가치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20
<표 13>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비교	21
<표 14> 부가가치세에서 업종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22
<표 15> 부가가치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22
<표 16>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23
<표 17> 부가가치세에서 법인들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치	25
<표 18> 부가가치세에서 법인들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27
<표 19> 소득계급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28
<표 20>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30
<표 21>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30
<표 22>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업종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31
<표 23> 매출액 규모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32
<표 24> 납세협력비용의 규모	33
<표 25> 업종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33

<표 26>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34
<표 27>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35
<표 28>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36
<표 29>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추정치	37
<표 30> 미국의 납세협력비용 추정치	44
<표 31> 영국의 주요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46
<표 32> 기타 OECD 회원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과	49
<표 33> 신고유형별 납세자 비율	53

1. 납세협력비용이란 무엇인가?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2005년에 국민들이 납부한 국세는 127.5조원이
고 지방세는 36.0조원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은 163.4조원이다. 여기서 조
세부담이 163.4조원이라는 표현은 국민들이 납부한 국세와 지방세의 명목가
치가 163.4조원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된다.
우선, 조세부담의 경제적인 가치는 163.4조원보다 클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163.4조원을 사용한다면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기회비용으로 정
의되는 조세부담의 경제적인 가치는 163.4조원 이상이다. 조세부담의 경제적
인 가치와 명목가치의 이러한 차이는 초과부담(excess burden)이라고 불린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도 비용이 발생한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외부의 세무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는
데 이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지불하
는 세금 이외의 모든 비용을 통칭하여 납세협력비용이라고 한다. 더불어 국
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행정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를 징세비라고 한
다.

즉, 2005년도를 기준으로 현재의 조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실제적인 비용
은 163.4조원의 조세부담에 초과부담, 납세협력비용, 그리고 징세비를 합한
것이 된다.

이 중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지불하는 세금
이외의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납세협력비용을 정의할 때도 명목적인 가치로
할 것인지 또는 경제적인 가치로 정의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가
장 바람직한 것은 경제적인 가치로 납세협력비용을 정의하는 것이지만 보통
납세협력비용의 경제적인 가치와 명목적인 가치 사이의 차이가 조세부담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으므로 계산이 간편한 명목가치로 납세협력비
용을 정의한다. 즉,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실제

로 지불하는 비용들의 합을 의미한다.

이때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라는 표현의 의미는 조세제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조세제도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들이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조세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비용은 납세협력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같이 세금의 납부만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비용은 납세협력비용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납세협력비용은 조세제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조세제도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들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이때 납세협력비용은 크게 내부인력의 인건비, 세무사 등의 외부전문가에게 지불한 비용, 그리고 기타의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들 비용을 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2.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납세협력비용은 보통 설문조사나 사례연구의 방법을 통해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차신준(1994)과 곽태원(1994)은 전자의 방법을 이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정수화(1993)는 후자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한정된 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의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납세협력비용의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의 전반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통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도 이 방법을 이용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가. 자료의 소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추출해야 하는데,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기업의 분포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뒤에서 살펴보듯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실제 규모별 기업의 분포와 표본에서의 규모별 기업의 분포가 다르면 추정된 납세협력비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표본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표본에서의 규모별 기업의 분포를 실제와 같게 만들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2006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법인세 신고기업들의 수와 법인세액에 따르면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기업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33만개의 46%인 15만개이지만 이들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전체 법인세수의 0.8%에 불과하다. 그리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1,815개로 전체 신고법인의 0.54%에 불과하지만 이들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16조원으로 전체 법인세수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500개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 실제의 매출액 규모별 기업 수에 따라 설문대상을 선정하면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2~3개 정도만이 선정되어 법인세수의 70% 이상을 부담하는 이들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적은 수의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수의 상당부분을 납부하는 대기업들을 실제의 비율보다 많이 선정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들을 실제 구성비보다 많이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듯이 기업별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치는 실제보다 크게 되고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분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설문지를 표본 추출한 법인에게 메일과 전화로 설문하였다. 설문 대상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의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의 수와 300인 이상인 기업의 수가 각각 2:2:1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별 응답 비율을 고려하여 추가로 법인들을 접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법인의 수는 아래의 표와 같이 356개이다.

<표 1> 설문에 응답한 법인의 분포

(단위: 개)

업종 \ 종업원 수	5~49인	50~299인	300인 초과	계
제조업	48	62	42	152
건설업	30	15	15	60
도소매/음식/숙박업	21	23	8	52
그 외 산업	22	55	15	92
합계	121	155	80	356

또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추출한 2,478개의 개인사업자에게 메일과 전화로 설문하였으며, 이 중 301개의 개인사업자가 설문에 응하였다. 이들 301개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응답한 내용을 전화로 다시 확인하였으며 <표 2>는 설문에 응답한 개인사업자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설문에 응답한 개인사업자의 분포

(단위: 개)

업종 \ 종업원 수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계
제조업	29	37	125	191
건설업	5	1	2	8
도소매/음식/숙박업	13	3	4	20
그 외 산업	56	10	16	82
계	103	51	147	301

나.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진 연구로는 차신준(1995)과 곽태원(1994)을 들 수 있다. 차신준(1995)은 법인세액의 약 1.4%를 납세협력비용으로 추정하였으며 곽태원(1994)은 법인세액의 0.76%를 납세협력비용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두 연구 모두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한다는 점을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표 3>은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표 3> 사업체 규모별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이전 연구

(단위: 원, %)

곽태원		차신준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5억 미만	7.46	5억 미만	15.90
5억 이상, 30억 미만	11.45	5억 이상, 30억 미만	6.36
30억 이상, 100억 미만	15.59	30억 이상, 100억 미만	3.84
100억 이상, 1,000억 미만	3.31	100억 이상	0.68
1,000억 이상	0.37		
종업원 수	비율	종업원 수	비율
20인 이하	7.69	10인 이하	22.50
20인 초과, 100인 이하	6.24	10인 초과, 50인 이하	6.63
100인 초과, 300인 이하	1.04	50인 초과, 100인 이하	3.17
300인 초과, 500인 이하	0.97	100인 초과, 300인 이하	2.40
500인 초과	0.43	300인 초과, 500인 이하	2.83

자료: 곽태원(1994) p. 126, 차신준(1995) p. 237.

이들의 연구 결과는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 역시 가지고 있다. 우선, 두 연구 모두 표를 통해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계학적인 방법을 통

해 확인하고 있지는 못하다.

둘째로,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다른 나라에서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곽태원(1994)은 이 때문에 자신의 추정치가 과소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의 전체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며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먼저 여기에서는 160개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매출액, 법인세액, 그리고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항목들 중 어느 하나라도 보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극단적인 수치를 보고한 몇 개의 법인들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표 4>에서는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매출액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먼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액도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은 6억원이며 납부한 법인세액은 643만원으로 법인세액은 매출액의 약 1.06%이다.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액도 매출액보다는 약간 빠르게 증가하여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평균 매출액이 7,096억원이며 법인세액은 매출액의 1.42% 수준인 10억원이다.

납세협력비용 역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276만원이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이 비용이 8,043만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납세협력비용은 매출액보다 상당히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즉,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매출액의 0.46% 수준인 반면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그 비율이 0.0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법인세에서의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

구분	매출액 (백만원)	납부세액 (만원)	납세협력 비용(만원)	납세협력비용/납부세액(%)	
				단순평균	가중평균
10억 미만	605.20	642.80 (1.06)	276.16 (0.46)	45.89	42.96
10억 이상 50억 미만	3,083.65	2,783.30 (0.90)	779.52 (0.25)	41.94	28.01
50억 이상 500억 미만	16,383.63	21,727.98 (1.33)	2,472.34 (0.15)	29.35	11.38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80,398.27	114,013.13 (1.42)	2,853.12 (0.04)	5.59	2.50
1,000억 이상	709,610.51	1,008,960.32 (1.42)	8,043.48 (0.01)	7.52	0.80

주: 1.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단순평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해당 기업 중의 하나에서 납부세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2. () 안은 매출액 대비 비율을 의미한다.

그 결과로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때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기업들에게 같은 가중치를 주고 구하는 단순평균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세액 1원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구하는 가중평균이다. 이 두 가지 평균 모두에서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중평균을 보면,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법인세액의 40%를 상회하는 데 비해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그 비율이 0.80%에 불과하다.

그러면 법인세 전체에서 납세협력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앞서도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가중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둘째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의 기업체 구성이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전자의 문제에만 국한하여 보면 단순평균을 사용할 것인지 가중평균을 사용할 것인지를 문제인데 <표 5>에서는 이 두 가지 평균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 나타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2,531억원이고, 평균 법인세액은 36억원이다. 그리고 법인들의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4.083만원이다. 기업체마다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단순평균을 구해보면 21.94%이며, 가중평균은 1.15%이다. 그리고 납세협력비용은 전체 매출액의 약 0.016% 수준이다.

<표 5>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규모

구분	매출액 (백만원)	법인세액 (만원)	납세협력비용 (만원)	단순평균 (%)	가중평균 (%)
규모	251,329.25	356,465.54	4,083.32	21.94	1.15

이제 앞서 제기하였던 두 번째의 문제를 검토해보도록 하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법인세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기업을 많이 선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 자료에서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전체의 26%를 차지하여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0.5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여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전체의 73%인 반면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에서는 84% 수준이다.

<표 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와 국세통계연보의 신고 법인의 비교

(단위: 원, %)

구분	연구 자료				국세통계연보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기업 수 비중	법인 세액	기업 수 비중	법인 세액
	단순 평균	가중 평균				
10억 미만	45.89	42.96	7.26	0.26	59.73	1.58
10억 이상 50억 미만	41.94	28.01	17.88	0.55	28.49	4.87
50억 이상 500억 미만	29.35	11.38	39.11	3.05	10.73	10.59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5.59	2.50	9.50	12.20	0.54	5.39
1,000억 이상	7.52	0.80	26.26	83.94	0.54	72.98
전체	21.82	1.15	100	100	100	100

자료: 『국세통계연보』, 2006

대기업들이 실제보다 많이 선정된 본 연구 자료를 이용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치는 현실과 다를 수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할 수록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크기는 증가하며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의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크기는 여기서 구한 4,064만원보다는 적을 것이며 실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여기서 구한 1.15%보다 높을 것이다.

통계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우리나라 법인세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을 추산하여 보았다. 먼저 위의 매출액 계급에 속하는 모든 기업들은 그 계급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만큼을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법인세액으로 각 계급에 속하는 기업들의 가중치를 두었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면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은 3.97%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1.1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하면 1.58%로 본 연구 자료의 추정치 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 계급 내에서도 사

업체의 규모가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같은 계급 내에서도 실제보다 규모가 큰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추출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의 법인세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3%보다는 약간 낮지만 3%에 가까운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표 7>에서는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업종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을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가장 낮으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그 다음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에 기업의 규모가 다른 업종들에서 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업종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의 일부는 기업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데서 기인할 것이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기업체의 규모가 다른 업종에 비해 작은데도 불구하고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7> 법인세에서 업종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구분	매출액 (억원)	납부세액 (억원)	납세협력비용 (만원)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단순평균	가중평균
제조업, 건설업	2,033.48	46.00	4,513.76	23.52	0.98
도소매/음식/숙박업	4,111.14	22.67	3,711.70	8.04	1.64
그 외	2,952.97	10.22	2,901.07	26.88	2.84

앞서의 논의들은 법인세에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도 증가하지만 체감적으로 증가하여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도리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업종별로 납세협력비용이 상이할 수도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우고 법인세에서 매출액과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를 비교하여 보았다.

$$\begin{aligned} \text{납세협력비용} &= \alpha_1 + \alpha_2 \times \text{기업의 규모} + \alpha_3 \times \text{기업의 규모}^2 \\ &+ \alpha_5 \times \text{기업의 특성 변수} + \text{오차항} \end{aligned}$$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매출액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의 제곱을 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납세협력비용의 크기가 기업의 규모에 선형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우선 업종을 살펴보았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1인 더미변수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0이고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1인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있거나 또는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도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변수를 추가하였다. 우선, ①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② 3가지 이상의 세액공제, ③ 감면소득구분계산서 작성, ④ 감가상각시 부인조서 작성, ⑤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중에서 몇 개의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질문하였고 해당하는 항목 수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더미변수로도 사용하였으며 3가지 이상의 세액공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더미변수로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존속기간과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도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8>은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는 있으며 또한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7에서 보면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은 약 6.6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매출액의 제공에 대해서도 많은 모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델 7에서 보면 3개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서류 작업 등을 함으로 해서 납세협력비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5,542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때에는 납부하는 법인세액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1회 받는 데에도 약 2,238만원 정도 납세협력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의 업종변수 등은 납세협력비용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다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치: 매출액 기준

(단위: 십억원, 만원)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상수항	1689.35 2613.63 (0.65)	1032.66 2636.10 (0.39)	142.05 2741.55 (0.05)	1601.26 3100.51 (0.52)	790.56 2762.77 (0.29)	2128.04 2560.41 (0.83)	2692.73 3240.95 (0.83)
매출액 (십억원)	9.63 2.13 (4.52)	8.47 2.24 (3.77)	7.27 2.27 (3.19)	7.07 2.28 (3.10)	9.22 2.17 (4.25)	8.16 2.14 (3.82)	6.56 2.29 (2.87)
매출액의 제곱	-0.0013 0.00049 (-2.59)	-0.0011 0.00051 (-2.18)	-0.00088 0.00051 (-1.73)	-0.00082 0.00051 (-1.60)	-0.0012 0.00050 (-2.49)	-0.0011 0.00050 (-2.28)	-0.00084 0.00052 (-1.62)
주식회사	419.32 2659.46 (0.16)	14.37 2661.28 (0.01)	270.46 2633.62 (0.10)	141.95 2636.60 (0.05)	367.23 2659.91 (0.14)	-508.04 2598.06 (-0.20)	-643.79 2596.92 (-0.25)
업종 더미변수 1				-1307.34 1297.59 (-1.01)			-1030.63 1277.14 (-0.81)
업종 더미변수 2			759.70 1497.12 (0.51)	-191.00 1769.64 (-0.11)			-12.31 1744.41 (-0.01)
항목 수					631.09 628.85 (1.00)		-640.58 697.32 (-0.92)
구조조정						-2116.92 2332.99 (-0.91)	-1269.42 2341.18 (-0.54)
3개 이상의 세액공제						5518.66 1526.01 (3.62)	5542.24 1723.11 (3.22)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60.10 37.92 (1.59)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2675.94 911.54 (2.94)	2619.05 913.25 (2.87)			2238.13 912.13 (2.45)
R ²	0.1558	0.1668	0.1965	0.2008	0.1603	0.2123	0.2453
Adj-R ²	0.1426	0.1493	0.1752	0.1753	0.1426	0.1915	0.2086

주: 1. 업종 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 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은 0을 그 외는 1을 의미

항목 수는 본문에서 설명한 해당 항목수를 의미

2. 각 항의 첫 번째 값은 추정치, 두 번째 값은 추정치의 표준편차이며 괄호 안은 t값임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수준에 이어서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에 대해서도 유사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우고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frac{\text{납세협력비용}}{\text{법인세액}} = \alpha_1 + \alpha_2 \times \text{매출액} + \alpha_3 \times \text{매출액}^2 + \alpha_4 \times \text{매출액}^3 \\ + \alpha_5 \times \text{기업의 변수} + \text{오차항}$$

<표 9>는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먼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8을 보면,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약 40%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약 0.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감소하는 폭은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씩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경우에 다른 업종에 비해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22.65%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세무조사 1회당 납세협력비용은 2천만원 이상 증가하지만 납부하는 세액은 그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결과이다.

그 외의 변수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표 9>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추정치

(단위: 십억원, %)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모델 8
상수항	38.03	40.61	43.83	31.12	29.70	49.37	40.69	40.79
	12.32	12.19	12.27	12.76	15.05	12.96	12.42	16.19
	(3.09)	(3.33)	(3.57)	(2.44)	(1.97)	(3.81)	(3.28)	(2.52)
매출액	-0.030	-0.062	-0.047	-0.050	-0.050	-0.057	-0.062	-0.046
	0.011	0.018	0.020	0.019	0.019	0.018	0.019	0.019
	(-2.51)	(-3.38)	(-2.32)	(-2.65)	(-2.64)	(-3.09)	(-3.32)	(-2.42)
매출액의 채급	0.0000048	0.000031	0.000024	0.000030	0.000030	0.000030	0.000031	0.000028
	0.0000024	0.000011	0.000012	0.000011	0.000011	0.000011	0.000011	0.000011
	(1.96)	(2.71)	(1.95)	(2.65)	(2.64)	(2.61)	(2.69)	(2.48)
매출액의 세제급		-3.74 ⁻⁹	-2.85 ⁻⁹	-3.94 ⁻⁹	-3.96 ⁻⁹	-3.62 ⁻⁹	-3.74 ⁻⁹	-3.72 ⁻⁹
		1.60 ⁻⁹	1.67 ⁻⁹	1.58 ⁻⁹	1.59 ⁻⁹	1.58 ⁻⁹	1.62 ⁻⁹	1.60 ⁻⁹
		(-2.34)	(-1.71)	(-2.50)	(-2.50)	(-2.29)	(-2.31)	(-2.33)
주식회사	-12.78	-12.66	-10.26	-18.19	-18.04	-11.82	-12.26	-18.78
	12.61	12.42	12.43	12.16	12.23	12.33	12.63	12.34
	(-1.01)	(-1.02)	(-0.83)	(-1.50)	(-1.47)	(-0.96)	(-0.97)	(-1.52)
업종 더미변수 1					1.26			0.38
					7.02			7.03
					(0.18)			(0.05)
업종 더미변수 2				22.49	23.44			22.65
				7.95	9.58			9.58
				(2.83)	(2.45)			(2.36)
항목 수						-6.21		-6.43
						3.31		3.59
						(-1.88)		(-1.79)
구조조정							-1.13	-6.42
							14.41	14.04
							(-0.08)	(-0.46)
3개 이상의 세액공제							-3.08	6.02
							7.75	8.34
							(-0.40)	(0.72)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0.35					
			0.21					
			(-1.68)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11.97	-11.90			-11.89
				4.65	4.69			4.80
				(-2.57)	(-2.54)			(-2.48)
R ²	0.0529	0.0863	0.1033	0.1596	0.1597	0.1075	0.0873	0.1794
Adj-R ²	0.0341	0.0619	0.0732	0.1255	0.1197	0.0775	0.0503	0.1224

주: 1. 업종 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 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은 0을 그 외는 1을 의미

항목 수는 본문에서 설명한 해당 항목수를 의미

2. 각 항의 첫 번째 값은 추정치, 두 번째 값은 추정치의 표준편차이며 괄호 안은 t값임

다.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한 연구로는 정수화(1993)가 있다. 정수화(1993)는 판매업,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3개의 업종에서 각각 1개의 기업씩 3개의 기업을 선택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는데, 이들 세 기업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은 각각 부가가치세액의 4.5%, 2.9%, 그리고 0.6%이라고 보고하였다.

정수화(1993)의 연구는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다른 세목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업종별로 납세협력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판매업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다른 업종에서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10>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의 사례조사: 정수화(1993)

(단위: 만원, %)

	기업 A (판매업)	기업 B (제조업)	기업 C (건설업)
부가가치세액 (a)	9,420	42,232	18,922
납세협력비용 (b)	424	810	117
b/a	4.5	1.9	0.6

자료: 정수화(1993), pp. 51~54.

정수화(1993)의 연구는 부가가치세에서도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과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일정한 한계도 갖고 있다. 우선 정수화(1993)의 연구는 3개 기업만의 사례 연구이어서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로, 정수화(1993)의 연구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판매업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 점 또한 분명하지는 않아 보인다. 정수화(1993)에서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선택된 기업의 규모가 판매업에서 선택된 기업에 비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기업의 규모를 같게 하여 판매업에서의 납세협력비용과 다른 업종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클지는 정수화(1993)의 연구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판매업의 경우 고객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보다 많이 수수하게 되어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클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명확하지 않다.

셋째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세 등에 비해 한계세율이 낮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세목에 비해 부가가치세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낮다는 보고도 그리 당연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며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169개 법인과 184개의 개인사업자를 합해 모두 353개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법인세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항목들 중 하나라도 보고하지 않은 기업 등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극단적인 수치를 보고한 기업들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사업체의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표 11>은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매출액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우선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707만원 정도이다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이 비용이 4,845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

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396만원 정도이다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은 1,045만원이다.

하지만 납세협력비용은 매출액의 증가에 비해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매출액의 1% 수준인 반면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들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매출액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 즉,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하지만, 매출액에 비해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속도는 상당히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납부세액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에서도 법인세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가중평균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부가가치세액이 30% 수준인 데 반해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부가가치세액의 0.43%에 불과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서는 그 비율이 9% 정도이다가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는 4%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비교하면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법인에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법인들의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708만원인 데 반해 개인사업자는 396만원이다. 반면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법인에서보다 개인사업자들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들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액 규모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매출액 (백만원)	납부 세액 (백만원)	납세 협력 비용 (만원)	납세협력비용 /납부세액 (%)		매출액 (백만원)	납부 세액 (백만원)	납세 협력 비용 (만원)	납세협력비용 /납부세액 (%)	
				단순 평균	가중 평균				단순 평균	가중 평균
10억 미만	636.3	23.8 (3.74)	707.7 (1.11)	34.28	29.72	506.45	43.05 (8.50)	395.78 (0.78)	18.01	9.19
10억 이상 50억 미만	2,830.6	88.1 (3.11)	1,242.9 (0.44)	27.45	14.10	2,355.68	110.76 (4.70)	653.52 (0.28)	14.25	5.90
50억 이상 500억 미만	16,275.7	404.7 (2.49)	1,603.4 (0.10)	14.5	3.96	10,817.20	289.59 (2.68)	1,044.64 (0.10)	8.70	3.61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74,071.4	1,600.9 (2.16)	2,511.4 (0.04)	8.62	1.57	-	-	-	-	-
1,000억 이상	621,809.5	11,248.6 (1.81)	4,845.0 (0.01)	2.57	0.43	-	-	-	-	-

주: () 안은 매출액 대비 비율을 의미함

그러면 부가가치세 전체에서 납세협력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구해 보면 <표 12>와 같다. 법인의 경우 평균 부가가치세에서의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2,266만원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97만원이다.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의 단순평균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서 각각 15.46%와 15.10%이고 가중평균은 각각 0.80%와 5.73%이다. 이때 개인사업자에서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로 개인사업자에서의 사업체의 규모가 법인에 비해 작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 납부세액이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데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 부가가치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구분	매출액 (억원)	납부세액 (억원)	납세협력비용 (만원)	단순평균 (%)	가중평균 (%)
법인	1,533.11	28.49	2,266.04	15.46	0.80
개인사업자	25.62	1.04	596.58	15.10	5.73

<표 13>은 법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비교하고 있다. 먼저 매출액 대비 납부세액을 보면, 법인세에서는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 이 비율이 1.06%이다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이 약간씩 증가하여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1.43%로 증가하고 있다. 이때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 대비 법인세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과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에서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증가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액의 비중이 도리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액의 비율은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는 3.74%이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1.81%이다.

둘째로,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를 보면, 두 세목 모두에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지만, 부가가치세에서보다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708만원으로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276만원의 약 2.6배에 달하는 반면,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반대로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즉, 법인세에 비해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보다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세에 비해 이 비율의 분자와 분모에 해당하는 납부세액과 납세협력비용 모

두에서 역진적이어서 이 비율 자체가 역진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단, 전체적으로 보아 법인세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부가가치세에서의 그것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3>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비교

구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매출액 (백만원)	납부세액 (백만원)	납세협력비용 (만원)	가중평균 (%)	매출액 (백만원)	납부세액 (백만원)	납세협력비용 (만원)	가중평균 (%)
10억 미만	636.3	23.8 (3.74)	707.7 (1.112)	29.72	605.2	6.4 (1.06)	276.2 (0.456)	42.96
10억 이상 50억 미만	2,830.6	88.1 (3.11)	1,242.9 (0.439)	14.10	3,083.7	27.8 (0.90)	779.5 (0.253)	28.01
50억 이상 500억 미만	16,275.7	404.7 (2.49)	1,603.4 (0.099)	3.96	16,383.6	217.3 (1.33)	2,472.3 (0.151)	11.38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74,071.4	1,600.9 (2.16)	2,511.4 (0.034)	1.57	80,398.3	1,140.1 (1.42)	2,853.1 (0.035)	2.50
1,000억 이상	621,809.5	11,248.6 (1.81)	4,845.0 (0.008)	0.43	709,610.5	10,089.6 (1.42)	8,043.5 (0.011)	0.80

주: 1. 가중평균은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의 가중평균을 의미함
 2. () 안은 매출액 대비 비율을 의미함

<표 14>는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업종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을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가장 낮으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도 그 외의 경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체의 평균 규모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업종에 비해 이들 업종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가 클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 평균 매출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 납세협력비용이 클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표 14> 부가가치세에서 업종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업종	법인				개인사업자			
	매출액 (억원)	납세협력비용 (만원)	납세협력비용/ 부가가치세액 (%)		매출액 (억원)	납세협력비용 (만원)	납세협력비용/ 부가가치세액 (%)	
			단순 평균	가중 평균			단순 평균	가중 평균
제조업, 건설업	1,230.5	2,223.37	16.88	0.67	28.29	693.20	15.75	5.81
도소매, 음식/숙박	3,448.0	3,011.13	17.07	1.02	50.53	374.78	12.11	8.96
그 외	825.7	1,791.25	10.41	1.16	15.61	388.30	13.92	5.19

<표 15>에서는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법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이 전체 납세협력비용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8%를 차지하였다. 신고서의 작성은 법인의 경우에는 36%,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3.5%를 차지하였다. 즉, 세금계산서의 작성이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작성이 납세협력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개인사업자에서가 법인에 비해 15%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 부가가치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단위: %)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작성	50.60	67.62
신고서 작성과 납부	35.91	23.51
기타	13.50	8.32

<표 16>에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구성을 매출액 규모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법인의 경우를 보면 매출액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작성이 전체 납세협력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

에서는 그 비중이 50%를 상회하다가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그 비중이 30% 정도 수준이다. 그러므로 앞서 법인에서보다 개인사업자에서 세금계산서 작성이 전체 납세협력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업체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표 16>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단위: %)

구 분	법인			개인사업자		
	세금 계산서 작성	신고서 작성과 납부	기타	세금 계산서 작성	신고서 작성과 납부	기타
10억 미만	54.62	33.46	11.92	65.61	26.15	8.24
10억 이상 50억 미만	59.65	30.56	9.79	69.90	21.77	8.33
50억 이상 500억 미만	56.21	34.81	8.97	64.50	21.95	8.55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40.00	42.50	17.50	-	-	-
1,000억 이상	34.68	41.11	24.21	-	-	-

앞서의 논의들은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절대적인 크기는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기는 하나 체감적으로 증가하여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는 도리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업종별로 부가가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상이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세에서와 동일한 식을 세우고 부가가치세에서에서 매출액과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를 비교하여 보았다. 이때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우선 법인세에서와 동일하게 업종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이 모두 면세인 경우에는 1, 일부의 제품만이 면세인 경우에는 0.5, 그리고 면세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0인 더미변수도 사용하였다¹⁾.

법인세에서의 회귀분석과 비교하기 위해서 법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부가

1) 물론 일부의 제품만이 면세인 경우 면세인 제품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야 하나 설문지에 이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어 절반의 제품이 면세인 경우로 가정하였다.

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해서 앞의 식을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7>에 나타나 있다. 이 표에 따르면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크기도 증가하고 있다. 모델 6을 보면,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은 약 7.5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의 법인세에서와 비교하면 매출액이 증가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증가 속도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매출액의 제공에 대해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보여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하지만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를 얻을 수 없었다. 즉, 법인세에서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에서는 세무조사의 여부가 납세협력비용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고 있다.

<표 17> 부가가치세에서 법인들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치

(단위: 원)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상수항	804.12	723.42	782.89	712.72	1096.59	980.76
	1233.13	1237.07	1279.34	1281.54	1410.78	1419.94
	(0.65)	(0.58)	(0.61)	(0.56)	(0.78)	(0.69)
매출액 (십억원)	8.12	7.59	7.73	7.71	8.11	7.45
	1.39	1.51	1.49	1.47	1.39	1.55
	(5.86)	(5.04)	(5.18)	(5.24)	(5.82)	(4.80)
매출액의 제곱	-0.0012	-0.0011	-0.0011	-0.0011	-0.0012	-0.0011
	0.000042	0.00045	0.00044	0.00044	0.00043	0.00045
	(-2.88)	(-2.42)	(-2.53)	(-2.61)	(-2.86)	(-2.37)
주식회사 여부	584.17	395.73	420.83	590.07	564.64	467.10
	1244.18	1262.30	1284.60	1266.87	1268.65	1290.77
	(0.47)	(0.31)	(0.33)	(0.47)	(0.45)	(0.36)
업종 더미변수 1					-298.11	-255.36
					572.37	580.15
					(-0.52)	(-0.44)
업종 더미변수 2			28.85	-53.39	-185.44	-232.65
			625.70	633.08	752.05	764.55
			(0.05)	(-0.08)	(-0.25)	(-0.30)
면세 여부			722.97			538.24
			988.88			1016.27
			(0.73)			(0.53)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17.29				
		19.17				
		(0.90)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352.57		317.23
				410.96		418.36
				(0.86)		(0.76)
R ²	0.3484	0.3517	0.3506	0.3514	0.3495	0.3536
Adj-R ²	0.3365	0.3358	0.3306	0.3314	0.3295	0.3254

주: 1. 업종 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 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업은 0을 그 외는 1을 의미
면세 여부는 모든 품목이 면세인 기업은 1, 일부 품목 면세는 0.5이고 면세 품목 없으면 0
주식회사 여부는 주식회사는 1을 그 외의 경우는 0을 의미
2. 각 항의 첫 번째 값은 추정치, 두 번째 값은 추정치의 표준편차이며 괄호 안은 t값임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수준에 이어서 부가가치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에 대해서도 법인세에서와 동일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18>은 법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법인세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에서도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의 법인세 모델 7에서는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약 40%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약 0.04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부가가치세에서 모델 6을 보면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약 24%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약 0.05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법인세에서보다 부가가치세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낮으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이 약간이지만 더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변수에 대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를 얻을 수는 없었다.

<표 18> 부가가치세에서 법인들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단위: %)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상수항	12.35	14.52	15.35	16.30	17.41	23.21	24.11
	12.71	12.72	12.75	13.17	13.10	14.45	14.45
	(0.97)	(1.14)	(1.20)	(1.24)	(1.33)	(1.61)	(1.67)
매출액 (십억원)	-0.033	-0.064	-0.056	-0.068	-0.05	-0.063	-0.056
	0.014	0.024	0.025	0.026	0.025	0.024	0.027
	(-2.33)	(-2.68)	(-2.27)	(-2.58)	(-2.06)	(-2.64)	(-2.08)
매출액의 제곱	0.0000080	0.000039	0.000036	0.000041	0.000032	0.000038	0.000035
	0.0000044	0.000020	0.000020	0.000021	0.000020	0.000020	0.000021
	(1.83)	(1.96)	(1.80)	(1.93)	(1.60)	(1.89)	(1.65)
매출액의 세제곱		-6.10 ⁻⁹	-5.83 ⁻⁹	-6.33 ⁻⁹	-5.11 ⁻⁹	-5.86 ⁻⁹	-5.47 ⁻⁹
		3.81 ⁻⁹	3.82 ⁻⁹	3.96 ⁻⁹	3.85 ⁻⁹	3.83 ⁻⁹	3.95 ⁻⁹
		(-1.60)	(-1.53)	(-1.60)	(-1.33)	(-1.53)	(-1.38)
주식회사 여부	6.40	5.56	7.77	5.75	6.59	6.56	5.27
	12.82	12.77	12.96	13.24	12.93	12.98	13.17
	(0.50)	(0.44)	(0.60)	(0.43)	(0.51)	(0.51)	(0.40)
업종 더미변수 1						-6.77	-6.35
						5.85	5.90
						(-1.16)	(-1.08)
업종 더미변수 2				-3.40	-1.95	-8.38	-6.47
				6.44	6.47	7.71	7.80
				(-0.53)	(-0.30)	(-1.09)	(-0.83)
면세 여부				4.37			4.95
				10.46			10.61
				(0.42)			(0.47)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0.20				
			0.20				
			(-1.01)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6.67		-6.93
					4.23		4.27
					(-1.58)		(-1.62)
R ²	0.0397	0.0546	0.0605	0.0573	0.0707	0.0641	0.0797
Adj-R ²	0.0222	0.0314	0.0315	0.0222	0.0360	0.0292	0.0334

주: 1. 업종 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 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업은 0을 그 외는 1을 의미
면세 여부는 모든 품목이 면세인 기업은 1, 일부 품목 면세는 0.5이고 면세 품목 없으면 0
주식회사 여부는 주식회사는 1을 그 외의 경우는 0을 의미
사업자 구분은 법인은 1을, 개인사업자는 0을 의미

2. 각 항의 첫 번째 값은 추정치, 두 번째 값은 추정치의 표준편차이며 괄호 안은 t값임

라. 종합소득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진 연구로는 차신준(1994)을 들 수 있다. 차신준(1994)은 법인세액의 1.4%를 납세협력비용으로 추정한 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세액의 29.8% 수준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차신준(1994)은 소득세의 소득구간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은 계급별 납세협력비용도 추정하였다. 차신준(1994)은 또한 소득계급이 변한다 하더라도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서와는 다른 모습이다.

<표 19> 소득계급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

소득 계급	$\frac{\text{납세협력비용}}{\text{소득세 납부액}}$	$\frac{\text{납세협력비용}}{\text{소득}}$
1,000만원 이하	53.8	1.7
1,000만원 초과~2,500만원	23.4	2.3
2,500만원 초과~5,000만원	33.1	2.9
5,000만원 초과~1억원	27.9	4.1
1억원 초과~5억원	33.8	4.3

자료: 차신준(1994) p. 109

사업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에 비해 납세협력비용이 클 수 있는 요인과 작을 수 있는 요인이 모두 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의 규모가 작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사업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에서의 그것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세에 비해서 종합소득세에서 더 적은 서류를 요구하므로 이 요인에 의하면 사업소득세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낮을 가능성

도 있다. 이 두 요인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181개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표 20>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매출액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192만원이었으며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은 10.58%이다.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크기는 증가하여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634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세액 대비 비율은 다소 감소하여 6.4% 수준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와 비교를 하면 먼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규모는 법인세에서의 그것보다 약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업들의 경우 법인세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276만원 수준이었으며 여기에서는 192만원 수준이다.

둘째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이 역시 감소하나 감소하는 폭 역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업들에서의 이 비율에 비해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인 기업들에서 이 비율은 1/4 수준인 반면 여기에서는 1/2을 상회하고 있다. 즉, 차신준(1994)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체의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0>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구 분	매출액 (백만원)	납부세액 (만원)	납세협력비용 (만원)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단순평균	가중평균
10억 미만	529.47	1,819.60	192.46	19.62	10.58
10억 이상 50억 미만	2,365.13	4,126.65	308.34	22.24	7.47
50억 이상 500억 미만	10,330.67	9,962.76	634.10	12.11	6.36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계산하여 보았다. 개인사업자들의 매출액은 평균 26.6억원이었으며,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은 평균 4천만원이었다. 그리고 납세협력비용은 306만원이었다. 앞서와 같이 기업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계산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단순평균은 20.17%이며 가중평균은 7.64%이다. 앞서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비교하면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이 상당히 높는데, 이는 사업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서 기인하며 동일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는 오히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구분	매출액 (백만원)	납부세액 (백만원)	납세협력비용 (만원)	단순평균 (%)	가중평균 (%)
액수	2,660.52	40.14	306.44	20.17	7.64

<표 22>는 사업소득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업종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업종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구분	매출액 (백만원)	납부세액 (만원)	납부협력비용 (만원)	납부협력비용/납부세액(%)	
				단순평균	가중평균
제조업, 건설업	2,803.74	4,373.79	339.98	22.01	7.77
도소매, 음식/숙박업	5,290.14	2,708.14	203.00	11.98	7.50
그 외	1,796.12	3,128.42	221.09	15.89	7.07

마.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

여기에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의 합을 추정하고 있다²⁾. 먼저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매출액별로 기업들의 평균 납세협력비용을 구해보면 <표 23>과 같다.

우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전체 납세협력비용이 925만원이었다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용도 증가하여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들에서는 이 비용이 1억 7,259만원에 달하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989만원이었다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용도 계속 증가하여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이 비용이 1,938만원에 이르고 있다.

납부세액 역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데 납세협력비용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법인들은 평균 5,826만원을 납부하는 데 반해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평균적으로 189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유사하여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납부세액이 6,313만원이었다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세액도 계속 증가하여 매출액이 50억

2) 근로소득세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주가 납부한 것은 아니나 근로소득세액을 납부세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는 6억 5,156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로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상대적인 크기는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납부세액의 약 16% 정도를 차지하는 데 비해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들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납부세액의 0.9%에 불과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납부세액의 16%인 반면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납부세액의 3%에 불과한 상황이다.

<표 23> 매출액 규모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매출액 (백만원)	납부세액 (만원)	납세협력비용 (만원)	납세협력비용/세액(%)		매출액 (백만원)	납부세액 (만원)	납세협력비용 (만원)	납세협력비용/세액(%)	
				단순 평균	가중 평균				단순 평균	가중 평균
10억 미만	653.6	5,825.9	925.2	55.97	15.88	521.1	6313.3	988.8	23.10	15.66
10억 이상 50억 미만	2,902.6	12,381.2	2,875.9	31.51	23.23	2376.7	16762.3	1236.5	16.18	7.38
50억 이상 500억 미만	15,955.7	68,836.4	5,440.3	19.04	7.90	11064.6	65156.2	1937.7	9.19	2.97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75,400.1	275,198.7	6,334.7	5.44	2.30	-	-	-	-	-
1,000억 이상	602,395.6	1,893,573.0	17,259.4	3.15	0.91	-	-	-	-	-

이제 납세협력비용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단순평균과 가중평균을 구해보면 <표 24>와 같다. 법인의 경우 매출액은 평균 1,712억원이고 납부세액은 평균 55억원이다.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8,117만원이며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단순평균은 19%이고 가중평균은 1.42%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평균 26억원이고 납부세액은 평균 1,500만원이며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1,216만원이다.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단순평균은 18.6%이고 가중평균은 6.8%이다

<표 24> 납세협력비용의 규모

구분	매출액 (억원)	납부세액 (억원)	납세협력비용 (만원)	단순평균 (%)	가중평균 (%)
법인	1,711.82	54.99	7,815.88	18.55	1.42
개인사업자	25.58	0.15	1,215.69	18.00	6.8

<표 25>는 납세협력비용을 업종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법인의 경우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을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가장 낮으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도 그 외의 경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체의 평균 규모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업종에 비해 이들 업종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가 낮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 평균 매출액이 많으며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 업종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억원, 만원, %)

업종	법인					개인사업자				
	매출액	납부세액	납세협력비용	납세협력비용 /세액		매출액	납부세액	납세협력비용	납세협력비용 /부가가치세액	
				단순평균	가중평균				단순평균	가중평균
제조업, 건설업	1,470.5	66.0	8,521.8	19.61	1.29	26.8	1.7	1,319.1	18.29	7.66
도소매, 음식/숙박	3,670.3	57.8	8,562.3	15.75	1.48	52.9	6.3	778.9	12.90	1.24
그 외	1,016.7	22.1	5,316.8	17.53	2.41	17.4	1.1	1,000.2	18.04	8.77

납세협력비용은 임직원이 사용한 내부인건비, 외부 대리인을 고용하는 데 지불한 외부인건비, 그리고 기타의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6>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이들 항목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된 항목은 내부인건비다. 법인이 경우에는 69%가 내부인건비이고 외부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이고 기타가 13%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내부인건비가 전체 납세협력비용의 48%이고 외부인건비가 31%이다.

<표 26>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구분	(단위: %)	
	법인	개인사업자
내부인건비	69.36	48.37
외부인건비	17.83	31.05
기타	12.81	20.58

<표 27>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납세협력비용이 구성을 매출액 규모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법인의 경우를 보면 매출액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외부인건비가 전체 납세협력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그 비중이 28% 수준이다가 매출액이 1,000억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그 비중이 14% 정도의 수준이다.

<표 27>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단위: %)

구 분	법 인			개인사업자		
	시간 비용	외부인건비	기타	시간 비용	외부인건비	기타
10억 미만	55.38	27.78	16.83	49.81	26.91	23.28
10억 이상, 50억 미만	63.34	20.34	16.32	45.70	34.52	19.78
50억 이상 500억 미만	67.64	17.53	14.83	57.70	27.27	15.03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77.27	18.35	4.39	-	-	-
1,000억 이상	76.77	13.71	9.52	-	-	-

앞서의 표들은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크기는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기는 하나 체감적으로 증가하여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는 도리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업종별로 부가가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앞서와 동일한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표 28>과 <표 29>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8>의 모델 7에서 보면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은 약 27.8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매출액의 제공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보여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폭은 점차적으로 둔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변수에 대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다. <표 29>의 모델 8을 보면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업들에서 이 비율이 18%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비중이 약 0.0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업종별 차이는 없었으며,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1회당 이 비율이 5.8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무조사를 받으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지만 납부세액도 증가하는데, 이때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보다 납부세액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8>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단위: 십억원, %)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상수항	1052.33 (2.23)	217.40 (0.35)	1022.15 (0.75)	1052.89 (0.78)	1760.18 (1.11)	914.01 (0.68)	2259.91 (1.37)
매출액 (십억원)	28.49 (9.38)	26.44 (3.18)	28.86 (9.20)	27.38 (8.48)	28.41 (9.33)	28.48 (9.36)	27.82 (8.43)
매출액의 제곱	-0.00441 (-4.94)	-0.00390 (-4.22)	-0.00450 (-4.89)	-0.00418 (-4.52)	-0.00439 (-4.88)	-0.00441 (-4.90)	-0.00429 (-4.56)
업종 더미변수 1					-851.60 (-0.99)		-1021.27 (-1.17)
업종 더미변수 2			135.90 (0.10)	-51.60 (-0.04)	-478.50 (-0.33)	144.06 (0.11)	-830.59 (-0.56)
면세 여부			-784.48 (-0.50)				-1297.44 (-0.81)
주식회사 여부	1808.36 (0.74)	1019.32 (0.41)	1948.28 (0.77)	1741.56 (0.70)	1730.73 (0.69)	1756.54 (0.71)	2026.29 (0.80)
사업자구분	1224.11 (0.50)	1727.22 (0.71)	1199.52 (0.47)	969.75 (0.38)	1333.98 (0.53)	1290.49 (0.51)	840.48 (0.33)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69.11 (2.03)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870.83 (1.01)			954.93 (1.10)
R ²	0.5577	0.5648	0.5582	0.5595	0.5595	0.5578	
Adj-R ²	0.5508	0.5562	0.5478	0.5491	0.5491	0.5491	

주: 1. 업종 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 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업은 0을 그 외는 1을 의미
면세 여부는 모든 품목이 면세이면 1, 일부 품목 면세는 0.5이고 면세 품목 없으면 0
주식회사 여부는 주식회사는 1을 그 외의 경우는 0을 의미
사업자 구분은 법인은 1을, 개인사업자는 0을 의미
2. 각 항의 값은 추정치이며, 괄호 안은 t값임

<표 29>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추정치

(단위: 십억원, %)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모델 8
상수항	15.51 (10.18)	15.57 (10.25)	15.78 (7.80)	14.18 (3.24)	13.56 (3.16)	19.20 (3.78)	14.47 (3.36)	17.89 (3.41)
매출액 (단위: 십억원)	-0.02 (-2.52)	-0.05 (-2.91)	-0.05 (-2.79)	-0.05 (-2.91)	-0.04 (-2.22)	-0.05 (-2.96)	-0.05 (-2.92)	-0.04 (-2.25)
매출액의 제곱	5.97E ⁻⁶ (2.07)	26.97E ⁻⁶ (2.14)	26.78E ⁻⁶ (2.11)	28.24E ⁻⁶ (2.19)	23.44E ⁻⁶ (1.85)	27.37E ⁻⁶ (2.17)	27.23E ⁻⁶ (2.15)	24.15E ⁻⁶ (1.87)
매출액의 세제곱		-4.10E ⁻⁹ (-1.71)	-4.09E ⁻⁹ (-1.70)	-4.29E ⁻⁹ (-1.76)	-3.69E ⁻⁹ (-1.54)	-4.15E ⁻⁹ (-1.73)	-4.14E ⁻⁹ (-1.72)	-3.79E ⁻⁹ (-1.57)
제조·건설업 더미변수						-4.77 (-1.74)		-4.50 (-1.61)
도소매·음식· 숙박업 더미변수				1.18 (0.28)	2.43 (0.58)	-2.34 (-0.50)	1.15 (0.27)	-0.86 (-0.18)
면세 여부 더미변수				2.03 (0.40)				1.06 (0.21)
주식회사 여부 더미변수	-4.30 (-0.55)	-4.61 (-0.59)	-4.41 (-0.55)	-5.53 (-0.68)	-4.87 (-0.61)	-5.17 (-0.65)	-5.02 (-0.63)	-5.28 (-0.66)
사업자구분 더미변수	1.35 (0.17)	2.83 (0.36)	2.70 (0.34)	3.67 (0.45)	5.37 (0.66)	3.62 (0.44)	3.37 (0.41)	5.73 (0.70)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0.02 (-0.16)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5.92 (-2.15)			-5.84 (-2.11)
R ²	0.0480	0.0588	0.0589	0.0597	0.0759	0.0702	0.0591	0.0864
Adj-R ²	0.0331	0.0403	0.0366	0.0336	0.0503	0.0444	0.0368	0.0537

주: 1. 제조·건설업 더미변수는 제조·건설업=0, 그 외=1
 도소매·음식·숙박업 더미변수는 도소매·음식·숙박업=0, 그 외=1
 면세 여부 더미변수는 모든 품목 면세=1, 일부품목면세=0.5, 면세품목 없음=0
 주식회사 여부 더미변수는 주식회사=1, 그 외=0
 사업자구분 더미변수는 법인사업자=1, 개인사업자=0
 2. 각 항의 값은 추정치이며, 괄호 안은 t값임

바. 우리나라 납세협력비용의 특징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세목에서 납세협력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276만원인 데 비해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은 평균 8,043만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회귀분석에서도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은 약 6~9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하지만 상당히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매출액의 0.46%이며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는 매출액의 0.01%이었다. 그 결과,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을 보면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42.96%이다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하락하여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는 0.80%이었다. 즉 납세협력비용은 매우 역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회귀분석에서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약 40%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약 0.04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납세협력비용의 가장 큰 특징은 역진성이다. 사업체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도 증가하지만 증가 속도가 매우 느려 납부세액이나 매출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사업체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비교하면, 법인세에 비해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보다 역진적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법인들에서는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법인세에서의 그것보다 2.6배 많은 반면,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반대로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2배였다.

하지만, 세액 역시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에서 역진적이기 때문에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두 세목에서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법인세의 경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법인들에서는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약 40%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약 0.04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었으며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법인에서는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약 24%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약 0.05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에 비해 법인세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높으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부가가치세에서 약간이지만 더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회귀분석의 결과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은 22~27백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납부세액도 늘어나서, 법인세에서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도리어 11.89%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인세에서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지만 납부세액의 증가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반면, 부가가치세에서는 세무조사가 납세협력비용이나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 법인세에서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납세협력비용이 낮아서가 아니라 납부세액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세액공제 등을 받는 경우에도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세제의 단순화와 관련한 논의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결과이다.

3.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활용

본장에서는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와 그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납세협력비용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측정하여온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영국과 미국의 최근 납세협력비용의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을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 연구 배경

일반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이라 함은 납세자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세법과 세무당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즉 실제 납부세액과 조세제도의 비중립성으로 인한 초과부담을 제외한 모든 비용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에는 자신들의 법적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축적하는 데 드는 비용, 납세신고서의 작성 및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데 들어간 시간, 세무대리인을 고용한 비용,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기 위한 교통비용 등과 같은 부수적 비용, 세무관련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한편 법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에는 매출 및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세무 및 세무회계 관련 직원을 고용함에 따른 비용, 기존 및 신규 납세의무 및 처벌 규정을 습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Sandford(1995)).

이와 같은 납세협력비용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근대경제학의 출발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1776)는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원칙(maxim)으로 ①형평성(equality) ②확실성(certainty) ③납부의 편리성(convenience of payment) ④징수

의 경제성(economy in collection)을 제시하였다.

특히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네 가지 원칙 중에서 두 번째의 확실성 원칙과 세 번째의 납부의 편리성 원칙은 세금 이외의 조세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조세제도임을 뜻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납세협력비용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인 징수의 경제성 원칙은 국고에 귀속되는 세입 이외에 추가적으로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조세체계를 설계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네 번째 원칙도 납세협력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³⁾.

이처럼 납세협력비용은 일찍부터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지만 아담 스미스 이후 19세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조세의 4가지 원칙 중 형평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집중하였고, 납세협력비용과 관련된 나머지 3가지 원칙(확실성; 편리성; 경제성)을 소홀히 다루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도 1970년대 이전까지 재정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조세의 비중립성에서 발생한 자원배분의 왜곡효과인 초과부담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고, 대부분은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⁴⁾.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다음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andford(1995)). 첫째, 컴퓨터 등의 기술 발전으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대규모 서베이 및 분석이 가능해졌고, 표본을 과학적으로 추출하여 그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선진국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함에 있어서 그 도입에 따른 효과를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소규모 기업 조직들의 납세협력비용 증대에 대한 과장된 주장을

3) 아담 스미스(1776)는 네 번째 원칙인 징수의 경제성을 논하면서 국가의 세입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중 네 번째 이유는 납세자들의 심리적 비용과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제5권 제2장 제2절(Part II)의 “Of Taxes” 편을 보라.

4) 이처럼 납세협력비용이 주류 경제학자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이유로 Tran-Nam and Evans(2002)는 다음 네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최적조세이론에 납세협력비용 등 조세운영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힘든 작업이다. 둘째, 많은 조세연구 분야와는 달리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인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셋째, 조세운영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분석, 즉 궁극적으로 누가 최종적인 비용부담을 지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매우 어렵다. 넷째, 조세운영비용은 어쩔 수 없는 것 또는 그 규모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좀 더 과학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정부 측에 의해 발생하였다. 셋째, 현대 경제에 있어서 실업 감소 및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정부 규제로 인해 이들에게 지워지는 부담을 축소하려는 노력 중에 납세협력비용은 정부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에게 지워지는 주요한 부담 중 하나로 인식되어 이를 축소할 필요성 제기되었다. 넷째, 조세제도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복잡한 조세 환경에 처하였고, 이에 조세개혁을 통해 조세체계를 단순화하려 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다섯째, 주요 세목들이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로부터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그 결과 자동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관심이 증대되었다. 여섯째, 1980년대 이후 조세행정비용의 축소를 위해 취한 조치가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1980년대 이후 외국에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정부로부터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으로 연결되어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가 보다 광범위하게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⁵⁾. 특히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북미 및 영연방 국가들은 각종 법규 특히 조세법규의 도입 시에 이러한 법규가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나. 미국의 납세협력비용과 활용

미국에서는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조세제도의 운영 비용이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다⁶⁾. 이때 조세제도의 운영비용은 징세비와 납세협력비용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경우 징세를 좁은 범위로 해석

5) Evans(2003)에 따르면 1935년 Haig의 연구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출판된 조세운영비용과 관련된 연구가 약 100편에 이르고 이중 60% 이상이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하였다고 한다.

6) Joint Economic Committee(2005)와 Slemrod(2004) 참조.

하여 미국 국세청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의 예산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지불한 시간비용과 현금비용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를 행하는 고용주 등 제3자에 의한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년간 미국의 납세협력비용을 연구한 Slemrod(1995)에 따르면 미국의 최근 납세협력비용은 다음의 특성을 지녔다고 한다. 첫째, 납세협력비용의 약 2/3가 장부기록 및 보관(recordkeeping)에 의해 발생한다. 둘째, 납세협력비용은 특정계층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4천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는 단지 연간 5시간 이하만을 세무 관련 일에 투입한다고 한다. 셋째,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의 소득 및 세액(tax liability)과 함께 증가하지만,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역진성을 나타낸다. 넷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시간비용과 현금비용 측면 모두에서 월등하게 높다. 다섯째, 전자신고는 세무양식 작성과 세액계산의 어려움을 감소시키지만 장부기록 및 보관의 부담을 줄이지는 못한다.

2004년 Slemrod교수가 미 하원 세입위원회(House Committee of Ways and Means)에서 행한 증언에 따르면 2004년 기준 개인소득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은 총 850억달러에 달하며 개인소득세수의 10.51%를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Slemrod교수는 1995 과세연도의 법인세수 대비 법인세 납세협력비용은 12.74%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⁷⁾.

7) 이러한 주장은 1982년 미국 국세청이 외부기관(Arthur D. Little, ADL)에 용역을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2004년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는 동 비율이 21.12%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Slemrod교수 자신과 Venkatesh연구원이 2002년 중대기업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조사에 기초한다.

<표 30> 미국의 납세협력비용 추정치

	개인소득세	법인세
대상 과세연도	2004	1995
납세협력비용(억\$)	850	200
시간비용(억\$)	700	200
시간(억)	35	8
시간당 평균 가치(\$)	20.0	25.0
현금비용(억\$)	150	
세수(억\$)	8,090	1,570
세수비중(%)	10.51	12.74

자료: Slemrod(2005)

미국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는 세제 단순화의 근거로 활용된다.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2005년 11월 미국 대통령 직속 조세개혁 자문단(panel)은 조세개혁의 기본방향 중 하나로 세제 간소화를 선정하였다. 세제 간소화를 위하여 자문단은 개인소득세 신고서인 Form 1040의 분량을 절반 가량으로 축소하고, 근로저축(at-work saving)·의료저축·퇴직저축·교육저축에 대한 15개의 상이한 조세지원을 3가지 단순한 저축지원제도로 통합하며, 자격요건 판단에 어려움을 제공하는 복잡한 phase-outs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보장급여소득에 대한 계산방식을 간소화하며,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최저한세(AMT)의 폐지 등을 제안하였다.

다. 영국의 납세협력비용과 활용

영국은 1970년대 이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가 학문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는 데 기여한 나라이다. 특히 1970년대 초 영국 Bath대학의 재정연구소(Centre for Fiscal Policy)를 통해 Sandford교수가 행한 개인소득세 납세협력비용 연구는 현대적인 납세협력비용 연구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Tran-Nam & Evans, 2002). 영국의 당시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소비·관세청(Customs

and Excise)은 1980년대 초 Sandford교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주요 세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1970년대 및 1980년대 초기 영국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는 미국을 비롯한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처럼 일찍이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관심을 가진 영국은 납세협력비용을 규제로 인한 기업 등 민간부문의 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85년부터 정부의 각 부처로 하여금 조세를 포함한 법률 제·개정 시 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대처정부 시절인 1985년부터 1998년에는 조세법의 변화가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납세협력비용 평가서(Compliance Cost Assessments, 이하 CCA)”를 통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CCA는 대처정부가 시행한 “규제완화 정책(the Deregulation Initiative)”의 일부로서 규제 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비용편익 분석에 포함된다.

한편 1997년에 집권한 블레어정부는 대처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더 나은 규제 정책(better regulation)”으로 대체하였다. 그 결과 1998년부터 모든 정부 부처는 기업 및 자선단체 등에 영향을 주는 규제 변화를 제안할 경우 “규제 영향 평가서(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작성하고 있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영국의 국세관세청은 외부기관(KPMG)을 활용하여 영국 기업들의 세무행정 부담, 즉 납세협력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을 통해 측정하였다⁸⁾. 여기에서 영국 국세관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내부비용, 외부비용, 구입비용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 내부비용은 세무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준비·제출 등과 관련하여 내

8) 일반적으로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이라 함은 행정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행정적 활동들(administrative activities)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모형을 가리킨다. 영국 국세관세청과 KPMG는 먼저, 세법 및 관련 규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들을 찾아낸 후 각 활동별로 소요시간, 원가, 수량을 인터뷰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산출하였다. 여기서 소요시간은 특정 활동을 완결하기 위해 투입한 총 시간이며, 원가는 시간당 개념으로 임금, 간접비(overhead cost), 외부 전문가 비용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수량은 매년 완결되어야 하는 활동의 빈도와 그 활동을 해야 하는 기업체의 수로 구성된다. 따라서 각 활동별 납세협력비용은 투입시간×원가×수량(인원×빈도)로 계산된다. 이밖에도 정보 및 자료 제출 등과 같은 세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새로이 구입한 물품의 비용도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여 납세협력비용에 반영시켰다.

부 직원에게 들어간 비용으로 내부직원의 투입시간과 시간당 임금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외부비용은 세무관련 정보 및 자료 준비·제출 등과 관련하여 외부 세무전문가에게 지출된 비용으로 도출하였고, 구입비용은 세무관련 정보 및 자료 준비·제출 등과 관련하여 기업이 소프트웨어·문방구 등을 구입한 비용과 우편요금 등으로 지불한 비용을 나타낸다.

그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전체 납세협력비용은 51억파운드이고, 이 중 41.2%는 내부비용이고, 49.4%는 외부비용이며, 나머지 9.4%는 구입비용이었다. 주요 세목의 납세협력비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은 10.2억파운드로 부가가치세액의 1.2%를 차지하였다. 이 중 내부비용이 63.3%, 외부비용이 10.64%, 구입비용이 26.02%이었다. 법인세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은 약 6.1억파운드이고 세액 대비 1.5%였다. 이 중 내부비용이 63.3%, 외부비용이 10.64%, 구입비용이 26.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득세의 납세협력비용은 약 8.6억파운드로 세액의 0.7%를 차지하였고, 이 중 내부비용이 15.6%, 외부비용이 83.9%, 구입비용이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영국의 주요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단위: 억파운드, %)

	전체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총계	51.00	10.20	6.08	8.57
내부비용	20.99	6.46	1.34	1.34
구입비용	4.79	1.09	0.31	0.05
외부비용	25.22	2.65	4.43	7.19
세수	4,475.70	834.01	399.36	1,282.01
세수대비 비율	1.1	1.2	1.5	0.7

출처: 납세협력비용은 KPMG(2006), 세수는 OECD(2007)에서 나옴.

특히 확인된 2,600개의 정보제공 의무 중 85개 정보제공 의무가 전체 납세 협력비용 또는 행정부담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영국의 재무장관(Chancellor)은 2006회계연도 예산에서 국세관세청의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두 가지 목표치를 세우고 이를 2010~11년까지 달성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첫 번째 목표치는 국세관세청의 서식 및 신고와 관련 행정부담을 5년에 걸쳐 적어도 10%(약 3억 3,700만파운드)를 줄이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치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행정부담을 3년에 걸쳐 10%(약 1,400만파운드)까지, 그리고 5년에 걸쳐 적어도 15%(약 2,100만파운드)까지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세관세청은 기업단체 및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정부담 자문위원회(Administrative Burden Advisory Board)”를 구성하였다. 이 자문위원회는 국세관세청이 기업의 행정부담 감소를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를 식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기업의 행정부담 감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장기적인 사업목적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strategies)을 운용중에 있다.

① 정보제공은 단 한번으로 줄여라

- 이미 신고된 자료를 더 잘 사용하도록 시스템들을 통합하여 동일한 세무정보 신고는 단 한번만으로 축소
- 개인소득세 신고서, 파트너십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등과 같은 주된 세금 신고서 양식의 합리화(새롭고, 보다 짧고, 보다 단순화된 양식 마련 포함)
-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청구서인 “자진 신고 납세 정산서(self assessment statement of account)”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세액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위한 신규 양식 도입
- 전자신고를 통한 자진 신고 납세 시 첨부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회계 소프트웨어에서 바로 국세관세청

에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편의 제공 등

② 세무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의 감축

- 보다 정확한 표적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한 부담 축소
-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다양한 세무 개입(compliance intervention) 모색 등

③ 신축적인 납부 선택권

- 부가가치세의 분할 납부 및 현금주의 회계를 허용하는 기준 매출액 확대
-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해 체납의 분할 납부 허용
- 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의 납세에 대해 직불카드 사용 허용

④ “단일 접촉 창구(single point of contact)” 생성

- 세액, 납세, 권리 등 전반적인 세무 상황에 대한 분명하고 완전한 이해를 통해 국세관세청과 효과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적절한 도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지원과 교육 및 지침(guidance) 제공

- 납세자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선
- 신고서식을 개선하여 보다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단순화시킴
-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교육 및 지원 전략 개발
- VAT 신규 등록자 및 등록을 원하는 소기업에게 쉽고, 기본적인 VAT 정보를 CD를 통해 제공 등

라. 기타 OECD 회원국의 사례

1990년대 이후 OECD 회원국은 과도한 행정규제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행정규제의 완화 및 보다 나은 규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자연스럽게 행정규제로 인해 기업 및 민간부문에 발생하는 행정부담에 대한 추정으로 이어졌다⁹⁾. 이러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국가는 규제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

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는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을 개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을 통한 행정부담 측정 결과들에 따르면 세제로 인한 행정부담이 기업들의 전체 행정부담의 상당한 몫을 차지한다고 한다(OECD(2008b)). 아래의 <표 32>는 세제 관련 행정부담 즉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과를 보여 준다.

<표 32> 기타 OECD 회원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과

구 분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²⁾	노르웨이
조사연도		2005	2004	2002	2004/05
납 세 협 력 비 용	개인소득세	24억CZK (1.76%)	5.9억유로 (1.20%)	7억유로 (2.47%)	-
	부가가치세	0.64억CZK (0.03%)	1.33억유로 (0.70%)	14억유로 (4.18%)	1.2억유로 (0.08%)
	법인세	33억CZK (2.46%)	-	-	-
	물품세	-	-	-	9백만유로 (0.11%)

주: 1) () 안은 세수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임

2) 네덜란드의 경우 개인소득세는 wage and salary tax를 의미

출처: OECD(2007)과 OECD(2008b)

각 국가들은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조세로 인한 기업의 행정부담, 즉 납세협력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징수절차를 통합하여 사회보험료 징수도 세무당국이 관장하게 하였고, 법무부와 재무부 및 통계청은 기업

9)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이란 정부규제에 의한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를 준수함으로써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정보제공의무는 정부규제로 인해 정보나 자료를 공공부문이나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의 정부제출용 금융자료를 전산화·표준화하여 획득된 자료를 기업의 세무신고와 통계보고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를 통합하였고, 여러 정부기관에 반복적으로 제출하였던 연간 회계자료를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 한번만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덴마크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등록 기준금액을 2만DNK에서 5만DNK로 인상하였고, 분기별 신고기준도 1,500만DNK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기업회계와 세무신고 간의 통합을 향상시키고, 세금 신고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세무신고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행하고 있다.

체코의 경우 각종 기준금액(thresholds)을 사용하여 납세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에 있어서 전년도 납부세액인 3만CZK~15만CZK(약 2만~10만달러(USD))인 경우 매달에서 분기마다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에서도 연간 매출액이 1,000만CZK(약 65,000달러(USD)) 미만이면 분기별 신고를 허용하였다.

4. 정책과제

본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과제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세제와 세정 측면에서의 정책 제안을하고자 한다.

가. 세법 제·개정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의무화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시 재정소요에 대한 추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납세자에게 미치는 행정부담에 대한 개량적 측정은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또한 1997년 제정

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하여 1998년부터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세금관련 분야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조사한 주요 세목별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영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세법의 준수로 인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역진적임이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에 이어 본 연구에서도 재확인되었다. 따라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이를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세법 등 규제의 변화로 인해 납세자, 특히 기업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을 지우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추정 등 수량적인 분석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세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상당수 OECD 국가들에서는 조세정책 개발 및 입법화 과정 중에 납세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주목한다면¹⁰⁾ 세법 제정 또는 개정 시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정부부처에서 제안된 세법안뿐만 아니라 의원 입법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추정 의무를 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세법안에 대한 논의 시 납세협력비용의 유발효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세제 간소화

납세협력비용과 필연적으로 관련된 세제 간소화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2007년 12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10) Evans and Walpole(1999)이 시행한 OECD 국가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21개 회원국 중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은 동 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고, 9개 국가에서는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 「지원제도 내용과 적용방법을 모름」을 선택한 비율이 약 40%에 달하였다. 따라서 조세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감면 요건 충족 기준을 보다 단순화하여 납세자의 이해도 및 이용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지 수가 많은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통·폐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한 조세특례제도가 2007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19개나 존재하지만 최저한세 및 조세감면배제 규정 등으로 실제 활용률이 저조한 조세지출 항목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용실적이 미미한 지원제도는 정비하고 유사한 성격의 지원제도를 통합한다면 세제의 단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 따르면 3개 이상의 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급적 동일한 규모의 혜택을 주면서 조세지원제도의 숫자는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속·증여세의 경우 비상장주식 및 복합건물 등 재산의 평가방식을 단순화한다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세액계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전자신고방식의 확대 및 고도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하는 전자신고비율은 2007년 기준 법인세 96.9%, 종합소득세 80.1%, 부가가치세 76.9%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이는 미국(소득세 47%), 스페인(종합소득세 23%, 부가가치세 21%), 프랑스(종합소득세 4%, 부가가치세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전자신고의 도입은 비록 늦었지만 그 활용은 매우 앞서가고 있다고 판단된다¹¹⁾.

그러나 모든 세목에 대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전자신고가 불가능하다. 이는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계약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실거래가 정보는 건설교

11)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962583>
(2008년 2월 18일 접속)

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해 집중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실거래가 정보가 세금신고에 활용되도록 적시에 건교부에서 국세청으로 자료 이전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전자신고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서면으로 신고하는 납세자의 비율이 법인사업자 약 50%, 개인사업자 약 24%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¹²⁾. 따라서 향후 전자신고만으로 세무신고가 종결되지 않는 이유¹³⁾를 파악하고, 순수 전자신고 비율을 더욱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기본서식 이외에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도 전자신고 시 첨부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표 33> 신고유형별 납세자 비율

(단위: %)

신고유형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서면신고만	4.5	7.3
전자신고만	45.8	69.0
모두	49.7	23.7

한편 최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3자 정보 및 세무당국을 포함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무서식 상의 기재항목들에 자동으로 사전에 기입하는 체계(pre-filled tax returns)를 구축·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¹⁴⁾. 우리나라도 현재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본서식에 자동으로 기입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에 바로 기본서식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과거의 신고자료 및 세무자료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세무계좌”를 납세자마다 지정하여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언제라도 자

12) 본 연구의 표본이 규모가 큰 기업을 과대 추출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기업이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3)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 관행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이중적인 신고서 제출이 불필요함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14) 이에 대한 최근 흐름은 OECD(2008a)를 참조하라.

신의 세무상황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의 큰 변화가 없는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과거 자신의 신고사항 및 그 내역을 인터넷 접속을 통해 확인·수정 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세무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전자신고를 허용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라. 세정의 성과지표로 활용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과세당국의 관심은 존재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추정하여 활용하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세무행정의 기능은 과세관청의 주도적인 과세권 행사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에서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7). 따라서 국세청이 이와 같은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납세협력비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신뢰할 만한 수준의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표본 추출 등에 대한 세무당국의 부가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납세자 유형별로 보다 세밀한 후속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세계·세정당국들은 자신들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게 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태원, 『우리나라 조세제도 운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1994.
- 정수화, 『우리나라 소규모 기업의 납세협력비 부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2.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 2007.
- 차신준,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납세순응비용과 징세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국세청 40년사』, 2007.
- Evans, C., “Studying the Studies: An Overview of Recent Research into Taxation Operating Costs,” *Journal of Tax Research*, Vol. 1, No. 1, 2003, pp. 64~92.
- Evans, C and Walpole, M, *Compliance cost control: a review of tax impact statements in the OECD*, Sydney: Australian Tax Research Foundation, 1999.
- Glassberg, B and Smyth, C, ‘Tax compliance costs: the problems and the practice- Inland Revenue’, in Sandford, C (ed.), *Taxation compliance costs measurement and policy*, Bath: Fiscal Publications, 1995.
- Joint Economic Committee, “Individuals and the Compliance Costs of Taxation,” 2005.
- KPMG, *Administrative Burdens- HMRC Measurement Project*, 2006.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6*, 2007.
- _____, “Information Note: Third Party Reporting Arrangements and Pre-filled Tax Returns: The Danish and Swedish Approaches,” 2008a.
- _____, “Information Note: Programs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Tax Regulations in Selected Countries,” 2008b.

Sandford, C (ed), *Taxation compliance costs measurement and policy*, Bath: Fiscal Publications, 1995.

Slemrod, J, “The Costs of Tax Complexity,” University of Michigan, 2005.

_____, “New Estimates of the Compliance Cost of Income Taxation,” Committee on Ways and Means, Subcommittee on Oversight, Hearing on Tax Simplification, 2004.

Tran-Nam, B and Evans, C, “The Impact of Cedric Sandford on the Discipline of Tax Compliance Costs,” *Australian Tax Forum*, Vol. 17, No. 4, 2002, pp. 389~406.